

한 - 중 FTA 제3.7조 「최소 공정 또는 가공」해설



오수교 관세사 KPMG 세정관세법인 고문

우리나라 전체수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FTA발효 전에 우리기업들의 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한 - 중 FTA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지리적 인접성으로 이러한 공정 또는 가공이 수반되는 무역거래 형태가 빈번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01 개요

일반적으로 FTA협정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대상국가로부터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 원산지상품인지의 확인방법은 크게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중에서 세번변경(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¹⁾이 적용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제조에 비원산지인 원재료나 부분품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 경우에도 HS 품목분류표의 2단위인 류(Chapter) 또는 4단위 호(Heading)나 6단위 소호(Sub-Heading)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HS Code의 변경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한 형태로 불안전 생산품에 대해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번변경기준은 일부의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원재료나 부분품이 사용되거나 또는 제조공정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무역생산패턴을 반영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전체 생산 공정이 일관되게 진행된 완전생산품에 대해서만 FTA특혜세율이 적용된다면 특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체약국 간 경제교류증대와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FTA의 실질적 혜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공정이나 가공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의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협정에서는 최소공정 또는 가공('불인정공정 또는 가공'이라고도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산지상품 결정시 품목별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 이하 'PSR'이라 한다.) 등 다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행공정이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상품은 원산지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제도는 세번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체계로 보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면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아세톤(제2914호)을 매니큐어 제거용으로 조그마한 용기에 포장만 하더라도 화장품(제3304호)으로 변경된다. 즉, 포장공정만을 거친 것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다음 [표 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세번이 변경되었다하여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자국산 원재료나 부분품 사용을 유도하거나 또는 역내공정이나 가공을 촉진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

(표 1) 가공공정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세번이 변경되는 사례】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사례】



02 최소 공정 또는 가공 해설

한 - 중 FTA 협정 제3.7조(최소공정 또는 가공)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이 부속서 3 - 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에 최소한으로 기여하는 다음의 공정이나 가공은 그 자체만으로 또는 조합(combination)하여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부속서 3 - 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기준에 따라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일부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가공이나 공정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 - 중 FTA에서 최소공정 또는 가공으로 지정한 다음 19개 공정이나 가공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의 적용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

일반적으로 ‘운송 및 보관 중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공정’으로 예를 들면 충격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우레탄폼과 같은 충전물 또는 실리카겔과 같은 습기제거제를 넣은 경우라도 이러한 공정으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첨가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이 운송이나 보관 중에 굳어지거나 부패 또는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다른 화학물질 등을 첨가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품의 보존이나 수송을 위하여 안정제(고결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경우라도 제28류의 주 제1호와 제29류의 주 제1호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설령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상품의 세번이 변경이 되어 PSR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나. 완전한 상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²⁾

다음 (사례 1)과 같은 경우에는 HS 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호가목에 따라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품들을 완전한 상품으로 조립하는 것 또는 상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더라도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번의 변경이 없다. 즉, 이러한 상품은 완전한 상품과 같은 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사례 1) 승용자동차의 부분품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경우의 세번의 변화



그렇지만 다음 (사례 2)와 같이 조립 등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 9108호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는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하지만, 조립되지 않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것은 제9110호로 분류한다.

(사례 2)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의 부분품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경우의 세번의 변화



(사례 2)는 조립되지 않은 것(제9110호)을 조립하여 제9108호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한 조립이나 분해가 아니라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따라서 쟁점은 '단순한'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조립이나 분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포장의 변경만으로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유념할 사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통칙 제5호에 따라 포장용기나 케이스는 담겨 있는 내용물에 따라 세번이 결정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예 : 신발이나 모자 등)이 별크포장된 것은 제6309호로 분류하는데, 이를 낱개로 포장한 경우에는 신품(의류는 제61류나 제62류, 신발은 제64류, 모자는 제65류의 해당하는 호)과 같이 분류한다.

또한 드럼에 담겨 있는 아세톤(제2914호)을 매니큐어 제거용으로 조그마한 유리용기에 소매 포장한 경우에는 매니큐어용 제품으로 간주되어 제3304호로 변경된다.

라.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일반적으로 세척·세탁,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공정을 거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중고품이나 재생품은 몇 개의 품목을 제외하고 신품과 같이 분류되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원피(제41류)나 모피(제43류)의 경우에도 불순물이나 지방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세척·세탁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마. 방직용 섬유와 다림질 또는 압착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원칙상 이런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바.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가공

원칙적으로 자동차나 가구 또는 각종 구조물 등에 페인팅을 하였다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에는 불완전

하거나 미완성된 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페인팅을 하지 않은 것은 미완성된 것으로 취급되며, 중고품에 페인팅을 하거나 광택가공을 한 경우라도 신품과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고품인 경우에는 페인팅을 하기 전에 앞의 라항의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마’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신품과 같은 세번으로 분류된다.

다만, 플라스틱이나 유리 또는 철강 등의 재료에 페인팅을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세번이 변경되면 “단순한” 공정에 해당되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예들 들면 유리거울을 만들 목적으로 투명 유리판의 한쪽 면에 금속을 피복하고 피복된 금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니시를 칠한 경우에는 단순한 페인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재료 표면의 광택가공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표 2) 페인팅 및 광택가공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사례

원재료 플라스틱판 (제3920호)	→	페인팅	→	최종 상품 플라스틱판(페인팅도포) (제3921호)
원재료 유리판 (제7003호)	→	페인팅 광택가공	→	최종 상품 유리거울 (제7009호)
원재료 철강판 (제7208호)	→	페인팅	→	최종 상품 철강판(페인팅) (제7210호)

사.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곡물은 제10류에 분류되는데, 쌀을 제외하고 곡물을 탈각하거나 표백, 연마 및 도정을 한 경우에는 제11류에 분류토록 제10류 주 제1호나목³⁾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공정이나 가공을 거쳐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아.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당류는 제17류(제1701호나 제1702호)나 제2940호로 분류한다. 우선 제17류에 속한 당류중에서 고체 상태인 것은 착색이나 향을 첨가하였다 하여 세번이 변경되지는 않는다.⁴⁾ 그러나 제1702호의 당 시럽이나 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착색하거나 향을 첨가하면 제2106호로 변경되지만, 이 경우에는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제2940호의 당류를 착향한 경우에는 통상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제2106호로 분류된다.⁵⁾ 원산지상품의 지위의 인정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불인정된다. 결정당을 제분 공정을 거쳐 부분적으로나 전체를 가루로 만든 설탕분말의 것이라도 세번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정은 불인정 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결정당(crystal sugar)(제1701호)



설탕분말(sugar powder)(제1701호)

자.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제8류의 식용 과실과 견과류의 해당 호에서 탈피 여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각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라도 4단위 호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3) 제10류 주 제1호나목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4) 다만, 제1701호 내에서는 착색을 하거나 향을 첨가한 것인지에 따라 6단위 소호가 변경된다.

5) 제29류 주 제1호사목에 따르면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도 제29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류는 화학적으로 독성이나 있거나 유해한 물질이 아니므로 이러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때문에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규정에서 식용이라고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8류 이외의 과실과 견과류(주로 제1211호나 제1212호 등)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1) 연마

이 규정에서 연마는 주로 제25류의 토석류나 제14부의 귀금속(貴金屬)과 제15부의 비금속(卑金屬)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면 채취한 자연 상태의 대리석(제2515호)을 분쇄하거나 절단한 것은 같은 호로 분류하지만, 최종 제품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표면을 연마한 경우에는 제6802호로 분류한다.

2)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곡물(제10류)을 분쇄하면 제1104호로, 신선한 고추(제0709호)를 분쇄하면 향신료(제0904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이나 반귀석(제7102호부터 제7104호까지에 분류한다)을 절단한 것은 같은 호로 분류하지만, 분쇄한 것은 제7105호로 분류한다.

귀금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정으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으나, 비금속(卑金屬) 판을 절단하여 봉이나 선으로 가공하면 아래(그림 1)과 같이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스테인리스강판의 절단 가공에 따른 생산품의 세번의 변경



스테인리스강판(제7219호) 스테인리스 스트립(제7220호) 스테인리스 봉(제7222호)

이때 단순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쇄된 것을 체로 쳐서 입자의 크기가 일정하게 분리하여 규격화한 경우이거나⁶⁾ 또한 정밀 절단기로 폭이나 두께·길이를 좁거나 얇게·짧게 절단한 물품이 의도된 것과 같이 전체가 폭·두께·길이가 동일하다면 단순 절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하지 않은 절단의 사례

평판압연제품의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제7225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폭으로 절단하여 다시 코일모양으로 감은 것(제7226호)은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절단에 해당되지 않는다.

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1) 감별(sifting)까, 체질(screening), 선별, 분류, 등급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종자나 곡물 또는 광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공정을 거치더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록 이러한 가공이나 공정을 거친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품의 예를 들면 제25류(예 : 수정)나 제26류의 광물이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공정을 통하여 얻은 원석 상태의 귀석이나 반귀석은 제71류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비록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2)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

매칭(상품의 배열)을 통하여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물품의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이러한 사례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HS 품목분류표의 특정한 호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가정해 볼 수 있다. 우선 공구인 톱(제8202호), 플라이어(제8203호), 수동식 스패너(제8204호)가 세트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8206호로 분류된다.

또 다른 예로는 신발용 광택제(제3405호), 솔(브러시 제9603호), 클리닝용 식물(주로 제6307호)로 구성된 상품의 매칭을 통하여 개인용 여행세트(제9605호)로 만든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비록 PSR의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6) 체로 치는 것이 다음의 카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이라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항의 조건이 "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산지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천연다이아몬드(제7102호)나 합성다이아몬드(제7104호)를 분쇄하여 특정 용도에 적합한 연마 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입자크기를 균일하게 분쇄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 분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협약문 영어원문 'sifting'을 감별(잘 살펴보고 알아서 구별함 또는 잘 살펴져 알게 되어 구별되다)로 번역하였는데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번역오류라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단어인 'screening'과 연계하여 체질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여겨진다.

(그림 2)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 포함)에 따라 세번이 변경하는 사례



공구세트(제8206호)



개인용 여행세트(제9605호)

3) 쪼개기, 구부리기, 감기 또는 풀기

예를 들면 대나무나 갈대 등을 돛자리나 세공품 제조에 적합하도록 쪼개거나 구부리는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비록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실이나 금속선을 감거나 푸는 경우라도 이와 같다.

타.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원칙으로 보아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지만, 제6부(제28류부터 제38류까지의 상품이 해당된다)의 화학품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중에서 특별히 규정한 상품인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향생제(제2941호)를 치료나 예방용의 의약품용으로 일회용 병에 소매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제3101호부터 제3104호까지의 비료를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105호로 분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포장공정이 단순한 공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앞의 향생제 사례와 같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적합하도록 활성성분인 향생제를 일정한 투여량으로 계량하여 유리병에 넣은 것이라면 단순한 포장 공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비료의 중량만을 계량하여 일정 중량 단위로 포장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포장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파.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HS 품목분류표의 분류원칙으로 보아 이와 같은 공정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또 다른 예로는 여러 종류의 향신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일반적으로 ‘recipe’라 한다)하여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카레분말(소호 제0910.91호)을 만들고 이 상품이 PSR에 충족된다면 ‘단순한 혼합’이 아니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참고적으로 향신료는 그 종류에 따라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로 분류한다.

하.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⁸⁾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1)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혼합은 같은 종류를 균질하게 섞는 경우(예: 품종이나 품질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한 경우도 있고 다른 종류를 균질하게 혼합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종류의 혼합은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쟁점이 될 여지는 없으나, 다른 종류의 혼합은 여러 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혼합의 대표적인 예는 제28류의 무기화학품이나 제29류의 유기화학품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물품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것만을 분류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혼합하게 되면 적정한 용도 등에 따라 주로 제30류부터 제38류까지로 변경된다.

예를 들면 아세트(제2914호)와 에틸알코올(제2207호)을 혼합하여 매니큐어 제거용(제3304호)으로 만든 상품이다. 중요한 것은 PSR의 조건에 충족될 때 이 둘의 혼합이 ‘단순한 혼합’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이 둘의 혼합이 매니큐어 제거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량장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라면 ‘단순한 혼합’이 아니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8) 원전이 “simple mixing of products”이므로 “생산품(또는 물품)의 단순한 혼합”이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혼합은 기체·액체·고체 상태인 재료나 물질을 섞는 것이지, 제품(article)은 그 성격상 일반적으로 혼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모든 재료와 당류의 혼합

어떤 재료에 당류가 혼합될 때에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 볼 수 있다. 우선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삼추출물(제1302호)에 당류를 혼합하여 인삼차로 만들면 제2106호로 변경되며, 의약품 원료(주로 제29류로 분류한다)에 당류를 혼합한 경우에 제30류의 의약품이 된다. 밀크(제0401호)에 당류를 혼합하면 제0402호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당류와의 혼합의 경우는 세번이 변경되어 PSR의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분말 밀크(제0402호)나 주스(제2009호)와 같이 당류를 첨가하여도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거. 시험 또는 측정

상품의 품질이나 작동 상태 등을 시험하거나 측정한 것이라도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가 없으므로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다.

너.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다른 물질로 단순 희석⁹⁾이 규정도 단순 희석과 단순하지 않은 희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하항의 '단순한 혼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순하지 않은 희석은 예를 들어 살균력이나 살충력이 강한 화학물질(주로 제29류로 분류한다)을 계량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양의 메탄올로 희석하여 살균제나 살충제(제3808호)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농도를 맞춘 경우로서 PSR의 조건에 충족된다면 '단순한 희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장 또는 냉동

일반적으로 신선한 상태의 자연생산물(예 : 육류, 어류, 채소, 과일 등)을 건조, 염장(또는 염수장), 냉동한 경우에는 세번이 변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오징어와 같은 연체동물을 건조하거나 염장 또는 냉동한 것도 모두 제0307호로 분류한다)도 있다.

신선한 것을 냉장하는 경우, 신선한 것과 같이 분류하므로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⁹⁾ 다만, 혼합과 희석이 구분되는 것은 혼합이란 각각의 물질의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고르게 섞여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희석이란 농도가 다른 두 기체 또는 액체나 고체가 섞여 전체적으로 농도가 낮아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다른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희석제라고 하는데, 주로 물이나 알코올 또는 전분 등이 사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정이나 가공을 거쳐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지에 상관없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표 3) 자연생산물의 신선·냉동·염장(염수장)·건조에 따른 세번의 변화

원재료 / 공정	신선(냉장)	냉동	염장(염수장)	건조
쇠고기	제0201호	제0202호	제0210호	제0210호
어류	제0302호	제0303호	제0305호	제0305호
감자	제0701호	제0710호	제0711호	제0712호
사과	제0808호	제0811호	제0812호	제0813호

러. 동물의 도살(slaughter of animals)

‘도살’이란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와 돼지와 같은 동물은 살아 있을 때에는 제1류로 분류하지만, 죽은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2류로 분류하며, 세번변경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번이 변경되어 PSR에 충족되는지에 상관없이 도살의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도살한 후에 요리나 판매를 위하여 특정한 부위별(갈빗살·안심·등심 등)로 절단한 것(경우에 따라 ‘도축’이라 한다)도 원산지상품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머. 가호부터 러호까지 규정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¹⁰⁾

예를 들면 곡물의 껍질을 제거하고 도정하여 선별하고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거친 경우라도 이들이 단순한 공정에 해당한다면 원산지상품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03 결론

한 - 중 FTA 협정 제3.7조(최소공정 또는 가공)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 중 FTA협정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어 FTA가 발효되어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 참고적으로 ‘공정(operation)’이란 껍질제거·도정·선별·포장과 같이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면, ‘가공(posses)’란 앞에서 설명한 둘 이상의 공정이 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나, 모든 상품에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상품에 따라 각각 달리 규정하여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 대안으로는 여러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리함으로써 각 FTA 협정의 통일적 적용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순한’의 정의에 대해서 한 - EU FTA협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 EU FTA(주해5)

제6조의 목적상, “단순한”이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기술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간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간 결합의 형성, 또는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생기게 하는 가공을 말한다.

형식상 한 - 중 FTA에서 지정한 19개 항 중에서 한 - EU FTA¹¹⁾와 동일한 것이 17개 항이고 너항과 더항은 한 - 중 FTA에만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너항과 더항에 관하여는 한 - EU FTA에서도 PSR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 중 FTA의 최소공정 또는 가공이 실질적으로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끝으로 최소공정 또는 가공에 관하여는 충분한 유권해석과 사례연구가 부족한 실정므로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최소공정 또는 가공’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FTA협정의 기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1) 한 - 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절 원산지 규정 제6조 “불충분 작업 또는 공정”

※ 이 글에서 제시한 의견은 관세청이나 국제원산지정보원 또는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